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Standards Administration
Wage and Hour Division

요약문서 #48: 이민 취업자에 대한 미노동법의 적용: 호프먼 플라스틱 판례가 임금시간과(Wage and Hour Division)에서 집행하는 노동법에 미치는 영향

2002년 3월 27일, 호프먼 플라스틱 컴파운즈사 (Hoffman Plastic Compounds, Inc.) 대 전국 노동관계 위원회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 No. 00-1595 (S. Ct.) 의 재판에서 연방 대법원은 노동관계 위원회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해고당한 불법이민 취업자 (undocumented worker)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

호프먼 플라스틱건에서 대법원은 불법이민 취업자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은 미연방 이민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연방 이민법은 근로자가 고용될 때 신분과 노동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호프먼 플라스틱건에서 한 근로자가 고용시 위조서류를 제출했다. 그는 노동조합을 만들려다 해고당했으며 이것은 전국 노동관계법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을 위반한 것이었다. 노동관계 위원회는 해고후 일정기간에 대한 체불임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합법적으로 취득되지 않은, 처음부터 위법으로 취업한 직업의 수년간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체불임금은 지급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불법취업자들이 연방노동법상 다른 법률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호프먼 플라스틱건에서 대법원은 단지 노동관계법이라는 한가지 법률을 해석했을 뿐이다. 이 법은 노동부가 집행하는 법이 아니다. 대법원은 노동부가 집행하는 피해받기 쉬운 근로자들에게 핵심적인 노동보호를 제공하는 법률들,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과 이동/계절별 농업노동자 보호법 (Migrant and Seasonal Agricultural Workers Protection Act: MSPA)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노동기준법은 이 법에 적용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최저임금과 또 일반적으로 오버타임에 대해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노동자 보호법 (MSPA)은 업주들과 농업노동자 고용인들(farm labor contractors)이 이주/계절별 농업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의 임금시간과 (Wage and Hour Division)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이주/계절별 농업노동자 보호법을 불법 또는 합법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집행할 것이다. 이 법률들의 집행은 전국 노동관계법(NLRA)에 의한 체불임금 지급과는 구별된다. 호프먼 플라스틱건에서 전국 노동관계 위원회는 해고당한 근로자가 불법적으로 해고당하지 않았을 경우 **일할 수 있었던** 시간에 대한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해결책으로 규정하지는 않은 법률에 의거해 체불임금을 요구했다. FLSA나 MSPA에 의해 노동부 (또는 노동자)는 이 법률들이 적용될 때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시간의” 체불 임금지급에 대한 대법원의 관점은 실제로 일한 노동시간과는 관계가 없다. 이같은 접근방법은 이미 두 건의 연방재판에서 채택됐다. 플로레스 대 앨버트슨스사 (Flores v. Albertson’s, Inc.), 2002 WL 1163623 (C.D. Cal. 2002); 류 대 다나 캐런사 (Liu v. Donna Karan International, Inc.), 2002 WL 1300260 (S.D.N.Y. 2002) 참조.

노동부는 합법적인 행동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는 법을 포함해 **호프먼 플라스틱스**건이 다른 노동법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아직 고려중이다.

호프먼 플라스틱스건의 영향이나 FLSA 또는 MSPA 조항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노동부의 무료 문의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1-866-4USWAGE: 1-866-487-9243). FLSA 또는 MSPA 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www.dol.gov 에서도 얻을 수 있다.

U.S. Department of Labor

Frances Perkins Building

200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210